KiRi 리포트 2020.3.30.
포커스

자영업 가구의 소득과 가계 부담에 대한 논의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요약

- 본고는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자영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사업적 측면이 아닌 가계 경제의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함
  -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서 '도시 지역에서 주소득원이 근로소득이 아닌 가구'를 자영업 가구로 가정하고 이들의 실질 소득과 비소비지출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자영업 가구의 실질 소득은 2012년 이후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소득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 가구의 소득 정체는 주소득원인 사업 소득의 감소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사업소득의 감소를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으로 보충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남
  - 실질 처분가능소득의 감소는 소득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조세, 사회보장,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남

- 자영업 가계의 비소비지출이 실질 구매력을 축소시킬 만큼 증가했다는 점에서 조세나 준조세 등에 대한 가계 부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임

- 자영업 가구가 납부하는 준조세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여도 납부 부담이 지속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 등급에 의해 소득의 감소가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변경 신청을 적시에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음

-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당국도 자영업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가계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노력도 더해진다면 위기 극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1. 검토배경

■ 본고는 불황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의 어려움을 가계 경제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자영업의 장기 불황 문제에 대해서 매출, 임대료, 인건비 등 사업적 측면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가계 경제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음
  - 본 보고서는 사업적 측면보다는 자영업 가구의 주수입, 부수입, 조세, 준조세 등 가계 경제의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이 코로나19 사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 보고서는 이와는 별개로 자영업 가계의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함
  - 코로나 19에 따른 충격이 완화되었다고 하여도 자영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은 지속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본고는 '도시 지역에서 주소득원이 근로소득이 아닌 가구(2인 이상)'을 자영업 가구라 칭하고 이들 가계의 소득과 더불어 조세, 준조세 등 비소비지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논의하고자 함

- 통계청은 「가계 동향 조사」[1]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중 도시 지역의 근로자외 가구를 자영업 가구와 가까운 개념으로 보고 이들의 가계 경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함
  - 「가계 동향 조사」는 농업, 어업, 임업 가구[2]를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주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자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도시가 아닌 지역의 근로자외 가구도 자영업자가 대부분이겠으나, 농업이나 어업 등과의 연관성이 높을 수 있어 도시 지역의 근로자외 가구로 논의의 대상을 국한하였음
- 「가계 동향 조사」는 최근 3년(2017~2019년)에 대해서 소비 관련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논의 대상은 소득과 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복지, 이자비용 등)으로 한정함
  - 또한, 동기간에 대해서는 분기별 자료만 발표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연간 기준 지표[3]를 추정하여 사용하였음

---

1) 통계청이 8,000여 표본가구에 대해 가계부 형식의 면접조사 방식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가구 단위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
2) 농업, 어업, 임업 등도 자영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날씨에 따른 작황 변화 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영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짐
3) 가중치의 차이 때문에 분기별 자료의 단순 평균은 연간 기준 자료와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16년의 분기 평균과 연간 지표의 차이를 산출하여, 2017~2019년의 분기 평균 지표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연간 기준 지표를 보정하였음

2. 자영업 가구 소득 추이의 특징

가. 자영업 가구의 소득 추이

■ 자영업 가구의 실질소득은 장기간 정체되어 있으며,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소득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그림 1〉 참조)

- 도시 자영업 가계의 실질 소득의 경우 2012년 월평균 약 362만 5천 원을 기록한 이후 장기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7년 후인 2019년에 월평균 약 375만 3천 원을 기록하는데 그침
  - 도시 자영업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2015년 304만 7천 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9년에도 월평균 300만 원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르게 나타남[4)]
  - 실질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2009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1〉 도시 근로자 및 자영업 가계 소득 및 가처분 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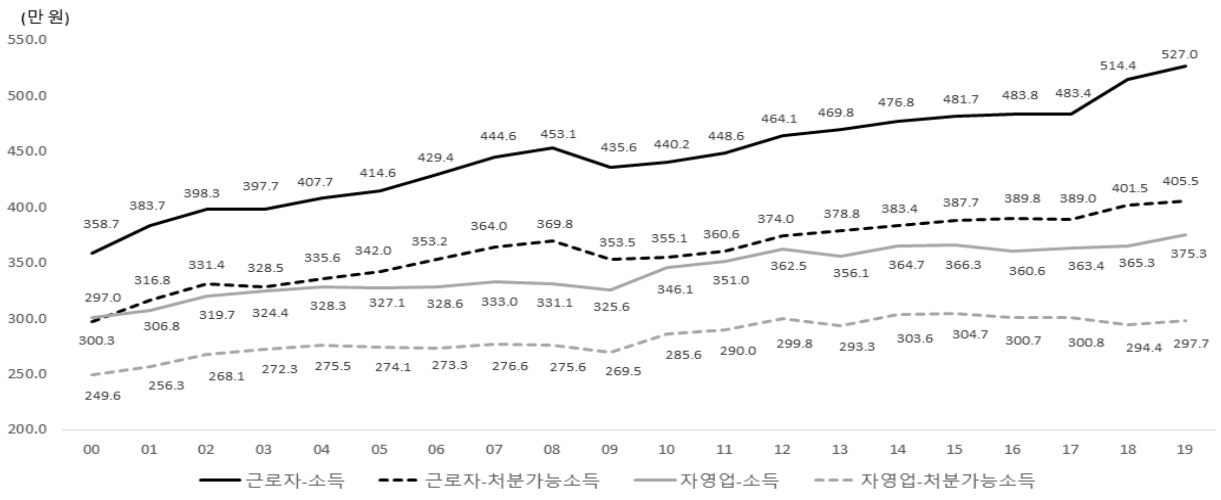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4)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은 상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상대적인 소득의 크기나 자영업의 소득 포착률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각 지표 자체의 추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함

- 자영업 가구의 실제 구매력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최근 감소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5)]
  - 자영업 가구의 실질 소득이 정체되기 시작한 2012년과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2015년을 기점으로 자영업 가구의 경제 여건을 항목별로 파악하고자 함

나. 자영업 가구의 항목별 소득과 비소비지출

자영업 가구의 장기간 소득 정체는 주소득원인 사업소득의 감소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사업소득의 감소를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으로 보충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남(〈표 1〉 참조)

- 자영업 가계의 주소득원인 실질 사업소득은 2012년 약 204만 1천 원에서 2019년에는 약 185만 3천 원으로 나타나 장기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6)]

〈표 1〉 자영업(근로자 외) 가구의 실질 소득과 비소비지출

(단위: 만 원, %)

구분		2009	2012	2015	2019	2015~2019 연평균 증가율
실질 소득(A)		325.6	362.5	366.3	375.3	0.6
	근로소득	75.0	81.8	87.1	100.7	3.7
	사업소득	184.6	204.1	195.7	185.3	- 1.4
	재산소득	1.9	3.3	2.8	3.2	3.2
	이전소득	51.6	57.9	66.9	83.3	5.7
	비경상소득	12.6	15.4	13.8	2.8	- 32.9
실질 비소비지출(B)		56.1	62.7	61.6	77.5	5.9
	조세	6.2	7.2	7.8	9.7	5.5
	사회보장	14.6	17.6	18.8	23.4	5.5
	이자비용	6.0	8.8	7.4	8.8	4.5
	이전지출	29.3	29.1	27.5	35.6	6.7
실질 처분가능소득(A-B)		269.5	285.6	304.7	297.7	- 0.6

주: 비소비지출에서 조세는 경상조세+비경상조세, 사회보장은 연금+사회보험, 이전지출은 가구 간 이전지출+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을 의미함
자료: 상동

5) 전국 근로자 외(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도 도시 자영업자 가구와 유사하게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패널 자료인 「가계 금융 복지 조사」의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경상기준 처분가능소득이 2016년과 2019년에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부진 현상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6) 비경상소득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전체에서의 비중도 작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하지 않음

-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81.8만 원 → 100.7만 원)과 공적 부조를 포함하는 이전소득(57.9만 원 → 83.3만 원)은 증가하여 사업 소득의 감소를 보완하고 있음

○ 주소득원인 실질 사업소득의 장기간 감소는 자영업 가계의 소득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여 이러한 현상은 장기간 구조적으로 지속되어 온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이후 나타난 자영업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는 소득이 정체된 상태임에도 조세, 준조세,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발생함(<표 1> 참조)

○ 2015~2019년 기간 중 실질 소득은 연평균 0.6%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동기간 중 비소비지출은 연평균 5.9% 증가하면서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연평균 -0.6%의 증가율을 기록함

- 비소비지출의 경우 조세, 사회보장(연금 및 사회보험), 이자비용, 이전지출(가구 간, 비영리단체)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동기간 연평균 4.5~6.7%의 빠른 증가세를 보임

○ 특히, 소득과 연동되는 성격이 강한 조세와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실질 소득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대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됨

다. 자영업 가구의 조세와 준조세

■ 자영업 가계의 비소비지출이 실질 구매력을 축소시킬 만큼 증가했다는 점에서 조세나 준조세 등 관련 징수 체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비소비지출 중 이자비용과 이전지출은 자영업자 가계의 자발적인 선택이나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의 대상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반면, 소득세나 재산세 등을 포함하는 조세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준조세의 경우 정책 당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자영업 가구가 납부하는 준조세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여도 납부 부담이 지속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표 1> 참조)

○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부과하기 때문에 순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세와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7)]

-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이외의 모든 종류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따라서 근로소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7) 재산세의 경우 소득과 관련 없이 부과되며, 다른 직종의 가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논의에서 제외하였음

- 준조세(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경우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에 속하며 근로자 중심의 직장가입자와는 다른 납부 기준을 가지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은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초로 하여 등급 점수를 부과하며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함[8)]
  - 국민연금은 별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며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영업자 스스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9)]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여도 재산과 자동차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 감소폭이 작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변경 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될 것임
  - 자영업의 소득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산, 자동차점수는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포착률을 보완하기보다는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임[10)]

〈표 2〉 자영업자의 소득기준 조세 및 준조세

구분		부과 기준	부과 및 조정 방법
조세	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비용 차감	세금 신고 시 적용
	종합소득세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종합 과세 (근로자와 동일)	세금 신고 시 적용
준조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이 기재된 서류 제출)
	국민건강보험	소득점수(97등급), 재산점수(60등급), 자동차점수(11등급)의 합계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과세 자료 등을 기초로 공단 산출

주: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은 「가계 동향 조사」에는 비경상 조세의 성격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표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음

8) 지역가입자의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당초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포착률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이후 조세 행정이 발전하고 소득포착률이 개선되어 감에도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주요국 중 공적 건강보험료를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없으며 일본의 경우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가중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획일적인 기준의 재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임

9)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더 내는 사람에게 더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자발성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

1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어서 재산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과대상에 해당되고, 과세표준금액이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에게는 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산 등급 상승에 따른 보험료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3. 시사점

■ 자영업 가구의 소득 여건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세나 준조세 등의 체계 개선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임

- 자영업 가계의 주소득원인 사업소득의 감소는 이미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개인서비스업의 구조적인 사양화와 관련되어 있어 단기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울 것임
- 소득 개선이 어렵다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정책적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나 준조세 등이 개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 당국도 자영업에 대해 다양한 가계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자영업 가구의 부담을 구조적으로 합리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준조세 부담을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하는 적극적인 위기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게 대해 2021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를 간이사업자 수준으로 감면하였음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하위 20%에 대해서 3개월간 보험료를 50% 경감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하위 50%에 대해서 3개월간 보험료를 50% 경감하는 등 일시적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조정 신청과 납부 예외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자영업자의 일시적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는 노력에 더해 이미 진행되어왔던 구조적인 자영업 가계의 부담 문제들도 개선해 간다면 위기 극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11]하는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소득과 관련 없이 준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임 KiRi

11) 건강보험료의 소득 기준 일원화는 이미 2016년에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각각의 대안을 가지고 제언했던 정책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임